

유치원(강동)

6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구 명일동 296-1
---	---------------	---------------

유치원(강서)

7	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발산동 707
---	----------------	-------------

유치원(동작)

4	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	동작구 사당동 199-1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制定理由를 말씀드리면 現行 各種 手數料徵收條例中 地方自治法에 根據하여 制定, 運用하고 있는 條例를 하나로 統合하고, 서울特別市教育廳 및 그 傘下機關의 行政情報에 대한 一般人的 閱覽·複寫要請時 手數料를 徵收하는 根據規定을 마련하며, 또한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을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와 서울特別市中學校入學및中·高等學校轉·編入學配定手數料徵收條例를 각각 廢止하여 이를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으로 統合하고, 一般人的 行政情報 公開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 등을 申請할 경우 그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諸證明에 關한 事項中 手數料를 徵收하는 證明的 種類

를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였으며, 手數料徵收에 대한 根據法令을 目的條項에 明示하였습니다. 社會團體申告에關한法律施行令의 改正으로 手數料 徵收根據가 없어진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社會團體登錄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28條 및 第130條이며, 別添 案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소관별 당 위원회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현행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복사요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함.

○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목적조항에 신설함(안 제1조).
-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183호 '94.3.2)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본문 7조 부칙 2조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한 것은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통합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공개 전형응시수수료 징수조례는 통합이 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되어 있어, 차후 이들에 대한 통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근거를 두고 각종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되며,
- 안 제3조 별표에서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등은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에 의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 안 제3조 별표에서 제증명 수수료 중,

중·고등학교 학생제증명 사항에 대하여 합격(입학)증명, 휴학(복학)증명, 생활기록부(학적부)증명과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증명, 학비감면 증명, 미 확정채권 양도에 관한 증명,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공유재산에 관한 증명 등,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였는 바, 이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 안 부칙제2조(적용범위), 제4조(2통이상의 수수료등), 제5조(면제), 제6조(징수방법), 제7조(징수시기 및 반환)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하였다고 생각되며,
-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1994년 1월 7일과 1994년 3월 2일에 각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례가 존치되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사회단체의 본부 및 지부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및 해산시에 수수료가 없으므로 조속히 동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敎育·學藝에 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해서는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